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0월 31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기업 활력 제고, 서민경제 지원, 출산·양육 장려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을 신설·확대하고 정책효과에 따라 일부 감면율을 조정 또는 종료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85개의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24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122개이며 총 감면 규모는 3조 9099억원임.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중 87개의 일몰기한을 단순 연장하고 있으며 5개는 일몰 종료, 15개는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26개의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향후 연간 3조 8798억 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천연가스 버스와 화물용 선박에 대한 감면의 일몰종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천연가스 버스는

장기간 감면 적용으로 충분히 보급되었고 정부의 친환경차량 지원이 무공해 차량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설명이고 천연가스 화물용 선박은 2024년부터 실시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인증등급별 감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나 동 규정에 대한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소위원회 회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취득세 감면 대상인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많은 사업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사람과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